

DDA, 2008년 12월 농업협상*

신 유 선

DDA 협상의 가속화를 위한 라미(Lamy) 총장 주도의 집중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 자유화 세부원칙 합의를 위한 각료회의가 연내에 개최되지 못하게 되었다.

팔코너(Falconer) 의장은 7월 소규모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때 잠정적으로 합의된 부분과 최근 집중적으로 추진된 이슈별 소그룹회의(Walk in the Woods) 논의를 통해 의견 절충이 있었던 분야를 중심으로 12월 6일 세부원칙(Modalities) 4차 수정안을 배포하였다. 이번 4차 수정안은 지난 7월 소규모 각료회의시의 잠정합의안 내용이 대체로 반영된 것이다. 한편, 주요국간 아직 입장차이가 커서 쟁점이 되어온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 SeP), 수입쿼터(Tariff Rate Quota: TRQ) 신설 등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별도의 의장보고서(Working Document) 형태로 제시하였다.

이후 12월 8일 그린룸(Green Room) 회의 이후 라미(Lamy) WTO 사무총장은 비농산물 분야별(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AMA) 자유화, 농업분야의 SSM 및 면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주요국들과 협의를 가졌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다고 하며, 따라서 12월 중순에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각료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라미(Lamy) 총장의 의견에 참가국들은 대체로 동의하며, 내년도 협상은 4차 수정안의 내용을 기초로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본 내용은 국내외 DDA 관련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유선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shinys@krei.re.kr 02-3299-4287)

1.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의 주요 내용

시장접근 분야

가. 관세감축

4차 수정안은 3차 수정안의 기본 틀(선진국 최소 감축률 54%, 개도국 최대감축률 36%)을 유지한 채 그동안 괄호로 남겨 놓은 4구간의 관세감축률을 70%(개도국 46.7%)로 확정하였다. 특이한 점은 개도국의 관세감축 이행기간을 기존의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개도국의 신축성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4구간의 관세감축률이 70%(개도국 46.7%)로 확정되었고, 개도국의 관세감축 이행기간이 기존의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표 1 세부원칙 3차, 4차 수정안 주요 내용 비교: 관세감축

3차 수정안(2008년 7월)			4차 수정안(2008년 12월)		
○ 선진국 감축률: 최상위구간 감축률 미정			○ 선진국 감축률: 최상위구간 감축률(70%) 제시		
구간경계		감축률(%)	구간경계		감축률(%)
4구간	75% 초과	66~73	4구간	75% 초과	70
3구간	50~75%	64	3구간	50~75%	64
2구간	20~50%	57	2구간	20~50%	57
1구간	20% 이하	50	1구간	20% 이하	50
○ 개도국 감축률			○ 개도국 감축률		
구간경계		감축률(%)	구간경계		감축률(%)
4구간	130% 초과	44~48.7	4구간	130% 초과	46.7
3구간	80~130%	42.7	3구간	80~130%	42.7
2구간	30~80%	38.0	2구간	30~80%	38.0
1구간	30% 이하	33.3	1구간	30% 이하	33.3
○ 이행기간: 선진국 5년, 개도국 8년			○ 개도국 이행기간을 10년으로 연장		

나. 관세상한(Tariff Capping)

관세상한은 관세가 일정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세부원칙에 일률적인 관세상한은 도입되지 않았다.

4차 수정안은 3차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관세상한의 구간경계(Threshold)를 선진국 100%, 개도국 150%로 유지하고 있다. 민감품목은 관세상한의 적용 예외로 인정하되, 이에 대한 대가로 구간경계를 상회하는 해당 세번에 대해 국내 소비량의 0.5%를 추가 증량해야 한다. 비민감품목 관련 내용은 여전히 괄호로 남겨 두었는데, 범위를 기존 1% 또는 2%에서 1%로 설정하고, 비TRQ 신설 대안(TRQ 증량, 이

비민감품목 관련 내용은 여전히 괄호로 남겨 두었는데, 범위를 기존 1% 또는 2%에서 1%로 설정하고, 비 TRQ 신설 대안을 유지하면서 감축률을 기존의 5% 추가에서 10% 추가로 조정하였다.

행기간 조정, 감축률 증대 등 3개 대안 중 한 가지 선택)을 유지하면서 감축률을 기존의 5% 추가에서 10% 추가로 조정하였다.

한편, 팔코너(Falconer) 의장은 비민감품목 관세상한 문제와 관련하여 2%까지 인정하되 4년 내에 100% 이하로 감축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작업문서(Working Document)를 통해 제시하였다.

표 2 세부원칙 3차, 4차 수정안 주요 내용 비교: 관세상한

3차 수정안(2008년 7월)	4차 수정안(2008년 12월)
○ 관세상한(선진국 100%, 개도국 150%)에 대한 일부 품목 적용 배제 - 특별품목 : 보상없이 상한적용 배제 - 민감품목 : 관세상한 적용을 배제하되 TRQ를 0.5% 추가 증량(개도국은 0.33% 증량) - 비민감품목 : 상한적용 예외범위를 1~2%로 한정하면서 추가 부담 규정 * 모든 민감품목에 TRQ를 0.5% 추가증량하거나, 해당 세번의 관세감축 이행기간 2년 단축 or 관세감축률 5%p 추가	○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의 관세상한 적용 배제 및 보상 규정은 동일 ○ 비민감품목의 상한적용 배제문제는 []으로 처리, 미해결쟁점으로 남겨둠. - 상한적용 예외범위 : 1% - 보상방안 : 전체 민감품목에 대해 TRQ를 0.5% 추가증량하거나 해당 비민감품목의 이행기간 2년 단축 또는 관세감축률 10%p 추가

다.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 SeP)

민감품목은 일반품목의 관세 감축률 공식보다 낮은 감축률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보상으로 수입쿼터(TRQ)¹⁾를 증량해야 한다.

4차 수정안은 기존 구조를 유지한 채 그동안 범위로 남아있었던 민감품목 개수를 4%(개도국 5.3%)로 확정하였다²⁾. 민감품목 지정에 따른 관세감축 이탈(Deviation)³⁾은 기존의 2/3, 1/3, 1/2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쟁점사항이었던 ‘동일 품목내 상이한 관세이탈 지정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동일 품목에 대해서는 동일한 관세이탈을 설정해야 함을 새롭게 명시하였다.

이와 함께 3차 수정안에서 범위로 제시되었던 보상(Payment)이 구체화되었는데, 2/3 관세이탈시 그에 대한 보상으로 TRQ를 국내소비량의 4% 증량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TRQ 증량기준이 되는 소비량 산출방식(Annex C)을 제시하였으며, 세부원칙에 민감품목 소비량 데이터(TRQ 증량 기준)를 첨부하도록 하여 이들 품목에 한하여 민감품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민감품목 소비량 데이터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웹사이트에 게재하도록 규정하였다.

2/3 관세이탈시 그에 대한 보상으로 TRQ를 국내소비량의 4% 증량하기로 확정하였다.

1) 일정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를 부과하여 시장접근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2) 단, 이러한 민감품목 개수에 대해 일본과 캐나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3) 일반품목에 비해 관세감축을 덜 하는 정도를 말한다.

표 3 세부원칙 3차, 4차 수정안 주요 내용 비교: 민감품목

3차 수정안(2008년 7월)	4차 수정안(2008년 12월)
○ 개수: 전체 세번의 4% 또는 6% ○ TRQ증량: 소비량의 4~6% -TRQ증량은 이행첫날 1/4, 3년간 증량 (개도국은 개수 1/3 추가, TRQ는 2/3수준) ○ 개도국에 대해 TRQ 증량 외 옵션 제시 -구간감축률 적용하되 3년 연장 -구간감축률의 3/4 적용하되 2년 단축(단, 민감품목 수의 2/3에 한정) ○ 소비량 계산방식 최근 논의내용 반영	○ 개수 및 TRQ증량 단일수치 제시 -개수: 4%, TRQ증량: 소비량의 4% (개도국은 개수 1/3 추가, TRQ는 2/3수준) ○ 개도국에 대한 이행기간 조정옵션을 추가 인정하되, 이행기간을 단축 -구간감축률의 2/3를 적용하되, 이행기간 3년 적용 (단, 전체 민감 품목의 1/2로 한정) -1/2적용+이행기간 2년(단, 1/3로 한정) -1/3적용+이행기간 1년(단, 1/4로 한정)

라. 특별품목(Special Product: SP)

개도국은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과 관련된 지표(Indicator)⁴⁾를 기초로 SP를 지정할 수 있다. SP는 개도국만 사용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 특별품목그룹(G33)⁵⁾이 일부 SP의 관세감축 면제 등을 주장하여 왔다. SP는 낮은 관세감축률을 적용할 수 있으며, 민감품목과는 달리 TRQ 증량 의무가 없고 관세상한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는 특혜를 가진다.

4차 수정안에서는 그동안 범위로 제시되었던 SP 개수 및 평균감축률이 한 가지 수치로 확정되었다. SP 개수는 전체 세번의 12%까지 지정할 수 있고, 평균감축률은 11%이다. 그리고 세번의 5%까지는 관세감축 면제를 인정하고 있다.

SP 개수는 전체 세번의 12%까지 지정할 수 있고, 평균 감축률은 11% 이다. 그리고 세번의 5%까지는 관세감축이 면제된다.

표 4 세부원칙 3차, 4차 수정안 주요 내용 비교: 특별품목

3차 수정안(2008년 7월)	4차 수정안(2008년 12월)
○ 개수 : 10~18% ○ 6% 감축면제 또는 감축면제불가 - 전체 SP를 평균 10~14% 감축	○ 개수 및 평균감축률 등 단일수치 제시 - 개수 12%, 평균 11% 감축, 감축면제범위 5%

마. 개도국 특별긴급관제(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

팔코너(Falconer) 의장은 그동안 집중적인 소그룹회의(Walk in the Woods)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의견 접근이 없었음을 고려하여 4차 수정안을 배포하면서 핵심쟁점

SSM 발동 품목 수가 전체 세번의 2.5%로 제시되었다.

4) 열량공급도, 자급률, 생산액 비중, 고용 비중 등이며 최소 세번에 대해서는 특별품목 지정시 지표 적용이 면제될 수도 있다.

5)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필리핀 등 개도국 SP를 옹호하는 나라들의 모임으로 개도국 특별품목 개수를 충분히 많이 인정하고 관세감축을 적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룹이다.

인 UR 양허 관세 초과 SSM에 대한 별도 작업문서(Working Document)를 배포하였다. 이에 따르면 SSM 발동 품목 수는 전체 세번의 2.5%로 제시되었고 발동기준 및 추가 관세는 <표 5>와 같다.

표 5 세부원칙 3차, 4차 수정안 주요 내용 비교: SSM

3차 수정안(2008년 7월)			4차 수정안(2008년 12월)	
○UR 양허관세 상한적용 SSM			○UR 양허관세 상한적용 SSM 발동요건은 3차수정안과 동일	
물량 기준 SSM	발동기준	추가관세	○UR 양허관세 초과가능 SSM관련 논의내용은 별도 문서로 제시	
	최근 3개년 평균 수입량의 110~115%	양허관세의 25% or 25%p 중 높은 것	-발동품목수 : 전체 세번의 2.5%	
	115%~135%	40% or 40%p	-발동기준 및 추가관세	
가격 기준 SSM	135%초과	50% or 50%p	발동기준	추가관세
	최근 3년 평균가격의 85%이하로 하락시	발동가격과 수입 가격 차의 85%	최근 3개년 평균 수입량의 120% 초과	양허관세의 33% or 8% 중 높은 것
○UR 양허관세 초과 가능 SSM			140% 초과	50% or 12%p
-발동품목수: 2~6개 품목			-발동기간 : 4~8개월(단, 2~4개월에 한하여 연도 초과 가능)	
-초과가능수준: DDA양허관세의 15% 또는 15%p 중 높은 것 적용			-발동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국내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 발동 제한	
* 발동기준 및 구제조치는 위와 동일				

바.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SSG)

UR 협상 결과 농산물에만 적용하는 SSG 제도가 생겼는데, 이는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국제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자동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를 ‘구제조치(Remedy)’라고 하기도 한다.

4차 수정안은 지난 7월 소규모 각료회의시 합의내용을 대체로 반영하였다. 이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SSG 발동가능 품목 수를 이행 첫째 전체 세번의 1%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7년 내 완전 철폐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개도국의 경우는 SSG 발동가능 품목수를 이행 첫째에 전체 세번의 2.5%로 감축하도록 하였다.

표 6 세부원칙 3차, 4차 수정안 주요 내용 비교: SSG

3차 수정안(2008년 7월)	4차 수정안(2008년 12월)
○ 선진국 : 모두 철폐 or 1.5%로 축소	○ 선진국: 이행첫날 1%로 축소, 7년간 철폐
○ 개도국 : 3%로 축소	* 단, UR양허관세 초과 금지
* 발동기준 및 구제조치는 현행 유지	○ 개도국: 이행첫날에 2.5%로 축소

선진국의 경우 SSG 발동가능 품목 수는 이행 첫째 전체 세번의 1%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7년 내 완전 철폐해야 된다.

사. 관세단순화

관세단순화는 종량세(수입량에 비례하여 관세 부과), 혼합세(종가세와 종량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과), 복합세(종가세와 종량세가 함께 부과) 등 복잡한 관세구조를 종가세(수입가격의 일정비율로 관세로 부과)와 같은 단순한 형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표 7 세부원칙 3차, 4차 수정안 주요 내용 비교: 관세단순화

3차 수정안(2008년 7월)	4차 수정안(2008년 12월)
○ 모든 관세를 100% 종가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 으로 처리(삭제 가능성 제시)	○ 모든 관세를 100% 종가세로 전환 또는 90%를 종가세로 전환(단, 이행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100% 종가세 전환을 마무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4차 수정안은 그동안 소그룹회의(Walk in the Woods) 논의를 참고하여 3차 수정안에 규정되어 있던 100% 관세단순화 의무의 대안으로 최소한 전체 관세선의 90%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하였다. 전체 세번의 90%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경우 비종가세에 대해서 각 회원국은 이행기간 종료시까지 상황을 검토하여 이행기간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모든 관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 쿼터내 관세(In-Quota Tariff)

TRQ 품목의 경우 일정 물량까지는 저율관세가 부과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고율관세가 적용되는데 쿼터내 저율관세에 대한 관세 감축이 필요하다.

4차 수정안은 7월 소규모 각료회의시 합의내용을 대체로 반영하였다. 선진국의 경우 쿼터내 관세를 50% 감축하되, 감축 후 관세가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행기간은 3년이며, 이행첫날 최소한 17.5%까지 감축해야 한다. 단, 5% 이하의 쿼터내 관세는 이행 첫째 말에 철폐한다. 개도국의 경우는 쿼터내 관세를 15% 감축하고, 관세감축이 면제되는 특별품목은 쿼터내 관세 감축 의무가 면제된다.

선진국의 경우 쿼터내관세를 50% 감축하되, 감축 후 관세가 10%를 초과할 수 없다.

표 8 세부원칙 3차, 4차 수정안 주요 내용 비교: 쿼터내 관세

3차 수정안(2008년 7월)	4차 수정안(2008년 12월)
○ 선진국: 50~70%감축(단, 0~15% 상한적용) -단, 5% 이하 관세는 철폐	○ 선진국: 50%감축(단, 상한 10%적용) -단, 이행첫날 17.5% 이하로 감축하며, 5% 이하 관세는 철폐
○ 개도국: 선진국의 1/2(단, 상한 미적용)	○ 개도국: 15%감축(단, 상한 미적용) -단, 감축면제 해당 특별품목은 쿼터내 관세도 감축면제

가. TRQ 관리

개도국의 경우 TRQ 관리방식을 유지하거나 선착순 및 비조건적 허가 방식 외의 다른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4차 수정안은 7월 소규모 각료회의시 합의된 개도국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다. 개도국의 경우 기존 TRQ 관리 방식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채택되는 방식은 최소한 2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이후 소진율이 연간 최소 비율(소진율 40% 초과시: 연 5.3%p, 40% 이하시: 연 8%p)만큼 상승할 경우 미소진이 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표 9 세부원칙 3차, 4차 수정안 주요 내용 비교: TRQ 관리

3차 수정안(2008년 7월)	4차 수정안(2008년 12월)
○ 미소진 쿼터 메카니즘을 제시 - 3년 연속 소진율이 65% 이하일 경우 TRQ 관리방식을 선착순 또는 비조건적 허가방식으로 변경	○ 개도국에 대해서는 신축성 부여 - TRQ 관리방식을 유지하거나 선착순 및 비조건적 허가방식 외의 다른 방식으로 전환 가능

국내보조 분야

가. 무역왜곡보조총액(Overall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OTDS)⁶⁾

그동안 괄호로 제시되었던 OTDS 감축률이 단일수치로 제시되었다.

4차 수정안은 지난 7월 소규모 각료회의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그동안 괄호로 처리되어 온 OTDS 감축률을 확정하였다<표 10>. OTDS 이행계획서 양허는 LDC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의 의무였으나 4차 수정안에서는 블루박스를 사용하지 않는 식량수출국 개도국(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NFIDC)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였다. OTDS의 감축 이행기간은 선진국 5년, 개도국 8년이다.

표 10 세부원칙 3차, 4차 수정안 주요 내용 비교: OTDS

3차 수정안(2008년 7월)		4차 수정안(2008년 12월)	
○ 보조금 감축률(%)		○ OTDS 감축률 단일수치 제시	
국가	OTDS	국가	OTDS
EU	[75][85]	EU	80
미국·일본	[66][73]	미국·일본	70
기타국가	[50][60]	기타국가	55
개도국	[33.3][40]	개도국	36.7

⁶⁾ UR 협상에서 크게 감축의무가 없는 허용보조인 그린박스와 감축을 해야 하거나 사용에 제한이 따르는 감축대상보조(AMS), 최소허용보조(De-minimis), 블루박스의 개념이 탄생하였다. DDA 협상에서는 AMS, De-minimis, 블루박스를 묶어서 무역왜곡보조총액(OTDS)이라고 하기로 했으며, AMS, De-minimis, 블루박스 각각도 감축해야 하고 사용상 제한이 따르며, 이를 모두 더한 OTDS도 감축해야 한다.

나. 감축대상보조(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⁷⁾

UR협정 이행 최종연도의 양허 수준을 기준으로 감축하며, AMS 수준이 높을수록 큰 감축률을 적용한다. AMS의 감축 이행기간은 선진국 5년, 개도국 8년이다.

AMS 총액뿐만 아니라 품목별 상한을 설정하여 품목별로 지원 가능한 보조금의 규모를 제한해야 하며, 이행 첫날부터 적용된다. 선진국은 1995~2000년 평균 지급액을 한도로 하며, 기준기간 동안 AMS 지원 품목뿐만 아니라 기준기간 이후 AMS 지급품목에 대해서도 상한을 설정하여 품목특정 AMS를 지급할 수 있다. 개도국의 경우는 3개의 대안('95~'00년 혹은 '95~04년 평균 통보된 AMS지급액, '95~'00년 혹은 '95~04년 평균 생산액의 20%, 해당연도 총 AMS의 20%)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품목별 AMS 상한을 설정할 수 있다.

4차 수정안에는 품목특정 AMS의 경우 해당국의 기준연도 최소허용보조(De-minimis) 수준보다 낮아지도록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표 11 세부원칙 3차, 4차 수정안 주요 내용 비교: AMS

3차 수정안(2008년 7월)		4차 수정안(2008년 12월)
○보조금 감축률(%)		○3차 수정안과 동일
국가	AMS	
EU	70	
미국·일본	60	
기타국가	45	
개도국	30	

다. 최소허용보조(De-Minimis: DM)⁸⁾

4차 수정안은 3차 수정안의 내용과 동일하다. 선진국은 현행 최소허용보조수준(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의 경우 해당 품목 생산액의 5% +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의 경우 농업총생산액의 5%)을 50% 이상 감축하되, 이행 첫날부터 적용한다. 개도국은 현행 최소허용보조수준(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는 해당 품목 생산액의 10% +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는 농업총생산액의 10%)을 33.3% 이상 감축하되, 선진국보다 3년 긴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7) 농업보조총액이라고도 한다. UR 협상 결과 각국이 추곡수매제 등에 사용하는 보조금 한도를 정해서 이행계획서에 표시했고, 이것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선진국은 6년간 20%를 감축하고 개도국은 10년간 13.3%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DDA 협상에서는 이렇게 감축하고 남은 한도에서부터 감축하기로 하였다.

8) 최소허용보조는 감축대상보조(AMS)와 성격이 같지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 감축의무가 면제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농업생산액의 5%, 개도국의 경우 10% 한도 이내이면 최소허용보조로 분류되어 감축의무가 면제되었다. 그러나 DDA 협상에서는 최소허용보조도 AMS와 마찬가지로 가축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정해진 감축률만큼 감축을 해야 한다.

표 12 세부원칙 3차, 4차 수정안 주요 내용 비교: DM

3차 수정안(2008년 7월)		4차 수정안(2008년 12월)
○보조금 감축률(%)		○3차 수정안과 동일
국가	DM	
EU	50	
미국·일본		
기타국가		
개도국	33.3	

라. 블루박스(Blue Box)⁹⁾

4차 수정안에서는 개도국의 블루박스 설정기준을 세분하여 일반개도국의 경우 해당 품목들은 전체 블루박스의 30% 이하, 한 품목은 10% 이하이나 최빈개도국(LDC)과 식량순수입 개도국(NFIDC)에 대해서는 이를 각각 75%, 25%까지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마. 어용보조(Green box)¹⁰⁾

4차 수정안에서 특이한 점은 Annex B의 각주 5, 6에 국내식량 구호 관련 취득가격과 외부 참조가격과의 차이를 AMS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13 세부원칙 3차, 4차 수정안 주요 내용 비교: 어용보조

3차 수정안(2008년 7월)	4차 수정안(2008년 12월)
◦ 직접지불제에 있어 기준년도를 고정 불변토록 하고 예외적으로 변경 인정	◦ 3차 수정안과 동일
◦ 개도국에 대해서는 일부 신축성 인정	

수출경쟁 분야

수출신용을 제외한 수출경쟁 분야는 4차 수정안에서 특별히 변경된 내용이 없다. 수출신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이행 및 감시절차에 따르나 쿠바가 수혜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쿠바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명시한 각주를 신설하였다(Annex J 각주 3).

⁹⁾ 단순히 보면 본질적으로 감축대상보조(AMS)와 같은 보조금이다. 그러나 UR 협상과정에서 주요국간 타협의 산물로 탄생했는데, 생산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대신 감축의무가 면제되는 보조금이다. 이것이 현재의 블루박스(Old BB)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블루박스로 지급된 보조금이 없다. DDA 협상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블루박스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기존 블루박스와는 달리 생산제한을 하지 않고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이다. 이를 새로운 블루박스(New BB)라고 한다. 물론 마음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경지면적 등을 고정하는 등의 제약이 따른다.

¹⁰⁾ 어용보조는 생산이나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보조로 감축의무가 없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일반서비스,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 자연재해 구호지원 등을 들 수 있다.

2. 12월 DDA 각료회의 개최 무산과 향후 전망

라미(Lamy) 총장은 금년내 농업 및 비농업분야(NAMA) 세부원칙 타결을 위해 당초 12월 13~15일로 예정하였던 각료회의 일정을 17~19일로 연기하면서까지 인도, 중국 및 미국 간의 이견을 절충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결국 NAMA 분야별 자유화 및 SSM에 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각료회의 추진을 포기하게 되었다.

지난 7월 각료회의 결렬의 핵심요인이 SSM이라면 이번 12월 각료회의 개최가 무산된 주된 원인은 NAMA 분야별 자유화라고 할 수 있다. 지난 7월 미국은 NAMA 분야별 자유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G-12간 협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하여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으나 이후 구체적인 양허를 요구하기 시작하며, 어떠한 분야(Sectoral)에 참여할지도 명시적으로 결정하라고 주장하였다. 참여할 분야(Sectoral)의 지정과 관련하여 미국은 섬유 및 의류 등 자국에게 민감한 분야는 특혜잠식(Preference Erosion)¹¹⁾ 목록에 포함하여 제외시킨 후, 미국이 희망하는 화학, 기계, 임업, 의약품 등에서는 분야별 자유화 대상으로 선택하라는 이중성을 보였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자국에게 민감한 분야를 제외할 수 있다면 개도국들도 제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비록 각료회의 개최는 무산되었지만 연말 휴가기간이 끝나고 내년엔 접어들면 다시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므로 남아있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12월 각료회의 개최는 무산되었지만 내년에 접어들면 다시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므로 남아있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농림수산물부 보도 자료(www.maf.go.kr)

농림수산물부, 농업통상용어해설, 2007

농림수산물부, 알기 쉬운 DDA협상용어 70선, 2008. 6

농림수산물부 해외농업 사이트(www.insidetrade.com)

WTO,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TN/AG/W/4/Rev.4, 6 December 2008

¹¹⁾ 특혜잠식문제는 주로 모리셔스 등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연안(ACP) 소규모 국가들이 제기하는 문제이다. 이 나라들은 설탕 등 일부 농산물을 낮은 특혜관세로 EU 등 선진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데, 선진국들이 관세를 전반적으로 낮추면 특혜관세와 일반관세의 차이, 즉 특혜마진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된다고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였다.